

인권 자료실		
98	A3-5	235
5/21		

### 외국인노동자 關係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사기피해조선족 동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온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그동안 하루빨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제도가 개혁되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여 왔다. 그리고 최근 정부내 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關係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크게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와 송출업체등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로 인해 막대한 이권을 누리고 있던 이해관계집단과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가 극심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법제정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특히 지난 5월 31일 경제5단체(중기협,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총, 무역협회)가 정부에 공개건의문을 보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갖가지 방식으로 법제정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외국인노동자 關係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확신하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시행해온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미 그 취지와 방법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1. 현재 2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중 14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산업기술연수생으로서 작업장을 이탈한 자들이다.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을 하는 이유는 현지에서 3천불에서 최고 1만불까지의 송출수수료를 송출기관에 주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금액은 연수생 임금으로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기에 당연히 이탈을 해서 보다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기협 연수협력단에서는 정수상한비용을 정했는데 최저 미얀마 300달러에서 최고 파키스탄 1,300달러만 받도록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심각한 사기사건들 중에서 천여명씩의 대량사기사건을 비롯한 대다수가 연수생모집을 빙자한 사기사건이고, 실제 송출업체들이 하청업자들을 동원하여 연수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기가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현행 제도로는 이들 사기피해자들을 전혀 구제할 수 없다.

3. 실제로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자격으로 인해 저임금과 각종 불이익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유린국가라는 비난을 받아 왔

다. 이는 연수생의 도입과 관리에 있어서도 국가나 공익기관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특정 사용자들의 연합단체인 중기협에 이양한 결과이다. 여러가지 개선책이 보완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4. 현재 중기협이 연수생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와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노사대립 등의 이유를 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반대이유이다. 이는 95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사실로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지 송출업체들이 엄청난 송출수수료를 받는데 그 중 상당수의 자금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수생 1인당 34만원씩을 관리비로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데 97년 3월까지 73,000여명의 연수생이 도입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서 받은 금액만 해도 몇백억의 엄청난 액수이다.

셋째, 연수생을 고용하는 업체로부터는 이행보증금으로 30만원씩을 받아 두는데 연수생이 이탈을 하면 이 돈은 중기협에 귀속이 된다. 현재의 이탈율로만 계산해도 몇십억원의 공짜돈이 굴러 들어 오는 것이다.

넷째,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영세 소기업에서는 연수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연수생을 받기 위해서는 청탁을 해야만 한다. 그도 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 고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적발이 되면 1인당 천만원이하씩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 연수생제도의 모순점이다.

6. 실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70여 퍼센트가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하고 있고, '저임금'때문이라는 답변은 20여 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영세 소기업에서는 '차라리 합법적으로 고용을 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법제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다수의 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법제정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정에 대해 상당수의 중소기업체 및 영세 소기업체들은 찬성을 하는데 반하여 유독 중기협만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위해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는 막대한 이권사업"으로서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일에 다른 경제단체들이 동조하고 나서서 것은 "검은 비리를 온존시키기 위한 경제단체의 결탁"임을 지적하면서 경제4단체는 중기협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정기국회에 외노협과 개신교는 6만여명의 서명부(대표 박형규목사)를 첨부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고, 가

톨릭에서도 6만여명의 서명부(대표 김수환 추기경)를 첨부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다. 또한 신한국당의 이재오의원을 비롯한 28인의 의원입법안,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용석의원을 비롯한 34인의 의원입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부에서까지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때 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이제 외국인 연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거나 더 이상 차별대우와 불이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 78개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1997년 6월 2일

## 외국인 노동자 관련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북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구미카톨릭근로자 센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청년 의료인회, 노동과 건강 연구회, 노동과 경제, 녹색연합, 대구근로자 회관, 대구 나눔의 집, 대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마산노동문제상담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노동위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불교인권위원회, 비뚜레 신앙인학교, 사랑의 차 함께타기 운동본부,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시화일꾼의 집, 실로암 선교센터,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안양 근로자 회관,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엠마우스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금곡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예수교장로회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외국인노동자마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신학연구소, 익산노동자의 집,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재중국동포문제시민대책위원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문노련,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지식인연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청년한의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 연합, 외국인 노동자나눔의 집,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NCC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년 선교회 (6월 2일 현재 78개 단체)